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중 핵심적인 인·허가 기능을 허가과를 설치하여 집중 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민원의 신속·정확성 확보는 물론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건설국 건축과의 명칭을 건설국 **허가과**로 조정함(안 제7조 제1항)

나. 총무국, 사회산업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건설국으로 이관함

(안 제5조 내지 제7조)

1)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사무 협조·조정(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2) 환경배출 시설의 인·허가 처리(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변경〉, 신고)

3) 공장설립 승인

4)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및 협의·허가· 신고지 사후관리)

5) 산림훼손관련 인·허가 업무처리(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로써 고객중심의 민원혁신 방안중

인·허가업무 창구일원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권고안인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기구 추진지침」에 의거 시행코자 하는 건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나. 내용타당성

○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

○ 복합민원 기능을 1개의 기구(사무실)에서 모두 해결처리 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서비스 구현

○ 민원인과 인·허가 담당공무원간의 유착가능성 해소 및 나아가 민원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되나,

○ 김포시의 경우 '98. 10. 13일 허가과를 설치하여 경영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과」 운영모델이 되었으나 **2000. 10. 13일자 중부일보에 실린 기사내용을 보면** 신설당시 25명이었던 직원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17명으로 줄어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당초 보다 1~2일 가량 지연되고 있어 허가과 신설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 제도개선의 문제점으로는 구조조정등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자체인력으로 충당해야하는 어려움과 책임자인 담당과장 및 공무원의 전문성, 기술성 확보가 시급함으로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의 배치는 물론 전보제한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처우를 우대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따라서, 허가과의 신설에 있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